

03. 사업소득자의 소득평가

- ▣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소득자와 그렇지 않은 실제 사업소득자를 모두 포함한다.

- ▣ 정상적인 사업자는 사고일 직전 과거 1년간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그러나 그 결과 산정된 소득액이 실제소득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종 및 경력,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, 직종별 업종별 통계소득 등을 참고하여 타당한 금액으로 정한다.(그러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만 적용된다.)

- ▣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우는 사고직전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득 표준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지는 소득으로 한다. 그러나 그 결과 산정된 소득액이 실제소득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종 및 경력,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, 직종별 업종별 통계소득 등을 참고하여 타당한 금액으로 정한다.(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만 적용된다.)

- ▣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엔 업종 및 경력,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중노임단가, 직종별 업종별 통계소득 등을 참고하여 타당한 금액으로 정한다.(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만 적용된다.)

- ▣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경우라도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85%만을 소득으로 인정한다.

- ▣ 동업자가 있는 경우엔 동업자 지분과 동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- ▣ 입증자료는 사업자등록증명서, 점포임대차계약서(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등), 소득금액증명원, 매출액증명원, 부가가치세납부증명원 등